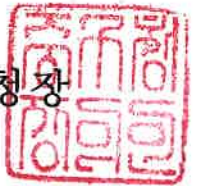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3~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 바,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에서 “5년 이내” 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8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 : 02-3396-5415, FAX : 02-3396-8739, e-mail : bestkbh@junggu.seoul.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3년”을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위탁계약)</p> <p>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p> <p>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p> <p>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의 사항은 제20조, 제23조, 위탁의 취소는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p>	<p>제27조(위탁계약)</p> <p>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